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4706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470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2210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 항소인 E

변론 종결 2016. 4. 28.

판결 선고 2016. 6. 3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2210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95,876,3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876,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의 "(2) 피고 E의 선의 항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D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C,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63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4.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예금과 부산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을 각 해지하고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가 2014. 3. 17.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소유이던 부산 동래구 G건물 A동 502호를 담보로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4. 3. 18. 기업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1,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4. 3. 14. D,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4. 3. 21.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 등은 계약 당일인 2014. 3. 14.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매매계약 직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통상의 매매계약에 비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다.

② 피고는, 계약 당일 매도인인 D, C로부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중도금과 잔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받고 싶다. 등기를 먼저 해 줄테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자신도 어차피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1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2. 잔금기간이 짧아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나 매수인은 은행대출 및 자금사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잔금대출 업무에 협조하고 잔금

시는 퇴거신고 및 명도하는 조건이다. 5. 양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잔금 및 부동산 명도는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은행대출을 받아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매도인인 D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속히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던 D, C와 사이에 위와 같이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거래형태가 아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2억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우연히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아파트의 벽에 붙어 있는 매매광고를 보고 D, C와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D, C는 2014. 3.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정기에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3,5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 등을 모두 C,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돈이 모두 C, D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피고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계좌를 통해 이체하지 아니하고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⑦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4. 3. 17.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D의 채무자이던 새마을금고의 소속 직원에게 1억 5,000만 원을 건네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D의 자력이나 재산상태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문춘언

판사이재현

판사이유진

별지